

 루리 위키 >  가이드 · 고민 해결

홈 > 고민 해결

루리의 줍줍 · 응모·실무 가이드

아이 계좌에 넣은 돈 증여신고: 언제, 10년...

루리의 줍줍이 정리한 글



아이 계좌에 넣은 돈 증여신고: 언제, 10년 합산, 기한 후 신고, 유기정기금까지

루리

미성년 자녀 이름의 계좌에 돈을 넣으면 증여로 볼 수 있고,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자녀(수증자)가 신고해야 해요. 미성년 자녀는 10년간 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받은 돈에서 2천만원까지 공제되는데, 아버지와 어머니의 증여가 합쳐지고 10년 안의 증여도 합산돼요. 공제 안에 들어도 신고해 두는 것이 안전해요.

미성년 자녀 이름의 계좌에 돈을 넣으면 증여로 볼 수 있고,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자녀(수증자)가 신고해야 해요. 미성년 자녀는 10년간 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받은 돈에서 2천만원까지 공제되는데, 아버지와 어머니의 증여가 합쳐지고 10년 안의 증여도 합산돼요. 공제 안에 들어도 신고해 두는 것이 안전해요.

2026-10-29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확인한 상속세및증여세법(시행 2026. 1. 2.), 같은 법 시행령(시행 2026. 10. 1.), 같은 법 시행규칙(시행 2026. 3. 20.), 국세기본법(시행 2026. 10. 2.), 국세기본법 시행령(시행 2026. 7. 1.) 조문을 정리한 일반 설명이에요. 세무 상담이 아니에요. 세법은 매년 바뀔 수 있으니 신고 전에 국세청 126, 홈택스에서 현행 기준을 다시 확인하세요. 예시는 설명용 **가상 예시**예요.

1 1. 한눈에 보는 순서

순서	할 일	근거
1	입금일(증여일)과 금액, 보낸 사람(증여자)을 기록	상속세및증여세법 제32조 https://www.law.go.kr/법령/상속세및증여세법/제32조 (https://www.law.go.kr/법령/상속세및증여세법/제32조)
2	같은 증여자(부모 합산)에게서 10년 안에 받은 금액 합산	같은 법 제47조 제2항
3	증여재산 공제(미성년 직계존속 2천만원) 적용	같은 법 제53조
4	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	같은 법 제68조 제1항
5	기한을 넘기면 기한 후 신고	국세기본법 제45조의3
6	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신고세액공제 3% 확인	상속세및증여세법 제69조 제2항

2 2. '아이계좌로 입금된 돈 증여신고 언제하면 될까요?'

- 증여세 신고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요(상속세및증여세법 제68조 제1항 <https://www.law.go.kr/법령/상속세및증여세법/제68조> (<https://www.law.go.kr/법령/상속세및증여세법/제68조>)).
- 증여세는 재산을 받은 수증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어요(제4조의2 제1항 <https://www.law.go.kr/법령/상속세및증여세법/제4조의2> (<https://www.law.go.kr/법령/상속세및증여세법/제4조의2>)). 자녀 계좌라면 자녀가 수증자예요.
- 증여받은 날은 증여재산의 취득시기예요.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4호는 부동산·건물 등 별도 규정이 없는 재산은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일로 정해요(<https://www.law.go.kr/법령/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/제24조> (<https://www.law.go.kr/법령/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/제24조>)). 계좌 입금은 보통 입금일을 기준으로 보지만 그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**공식 확인**이 필요해요.

-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해요(법 제45조 제4항 <https://www.law.go.kr/법령/상속세및증여세법/제45조> (<https://www.law.go.kr/법령/상속세및증여세법/제45조>)). 그래서 부모가 자녀 이름 통장에 넣은 돈은 자녀 소유로 보는 것이 출발점이에요.
- 기한을 계산하는 방법은 달 단위로 끊어요. 가상 예시로 2026년 3월 15일에 입금했다면 3월 말일부터 3개월이므로 2026년 6월 30일까지예요.
- 현금 증여재산을 신고기한 안에 돌려주면 증여가 없던 것으로 보는 반환 특례의 대상에서 빠져 있어요(법 제4조 제4항, 금전은 제외 <https://www.law.go.kr/법령/상속세및증여세법/제4조> (<https://www.law.go.kr/법령/상속세및증여세법/제4조>)). 입금한 돈을 돌려받을 계획이라면 세무서에 **공식 확인**하세요.

3 3. 10년 합산과 공제 한도

- 증여재산 공제는 배우자 6억원, 직계존속 5천만원(미성년자가 직계존속에게 받는 경우 2천만원), 직계비속 5천만원, 4촌 이내 혈족·3촌 이내 인척 1천만원이에요. 해당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이미 공제받은 금액과 합쳐 한도를 넘으면 초과분은 공제하지 않아요(법 제53조 <https://www.law.go.kr/법령/상속세및증여세법/제53조> (<https://www.law.go.kr/법령/상속세및증여세법/제53조>)).
- 같은 사람(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까지 포함)에게서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더해요(법 제47조 제2항 <https://www.law.go.kr/법령/상속세및증여세법/제47조> (<https://www.law.go.kr/법령/상속세및증여세법/제47조>)). 그러므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증여는 한 덩어리로 봐요.
- 여러 번 증여한 경우 공제는 최초 증여의 과세가액부터 순서대로 해요. 동시에 있으면 안분해요(시행령 제46조 제1항 <https://www.law.go.kr/법령/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/제46조> (<https://www.law.go.kr/법령/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/제46조>)).
-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에게 증여를 받으면 위 공제와 별도로 1억원을 공제해요. 혼인 공제와 합쳐 1억원이 한도예요(법 제53조의2 <https://www.law.go.kr/법령/상속세및증여세법/제53조의2> (<https://www.law.go.kr/법령/상속세및증여세법/제53조의2>)).
-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아요(법 제55조 제2항). 이 기준은 과세표준 기준이라, 공제 전 금액이 아니라 공제를 뺀 값이에요.
- 세율은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%예요(법 제56조, 제26조 <https://www.law.go.kr/법령/상속세및증여세법/제26조> (<https://www.law.go.kr/법령/상속세및증여세법/제26조>)).
-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에서 공제·감면액을 뺀 금액의 3%를 공제받아요(법 제69조 제2항 <https://www.law.go.kr/법령/상속세및증여세법/제69조> (<https://www.law.go.kr/법령/상속세및증여세법/제69조>)).
- 공제 한도 안이라 낼 세금이 없어도 신고해 두면 10년 합산의 기준 자료가 남아요. 신고하지 않은 증여의 합산 처리 여부는 세무서의 판단이므로 **공식 확인**이 필요해요.

4. '자녀계좌 기한 후 신고 및 유기정기금 증여 문의': 기한 후 신고

-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내지 않은 사람은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서를 낼 수 있어요.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그 세액도 내야 해요 (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1항·제2항 <https://www.law.go.kr/법령/국세기본법/제45조의3> (<https://www.law.go.kr/법령/국세기본법/제45조의3>)).
- 무신고 가산세는 무신고납부세액의 20%예요. 부정행위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40%예요 (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<https://www.law.go.kr/법령/국세기본법/제47조의2> (<https://www.law.go.kr/법령/국세기본법/제47조의2>)).
- 기한 후 신고를 하면 이 가산세를 줄여 줘요.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는 50%,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는 30%,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는 20%를 감면해요.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낸 경우는 제외예요(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2호 <https://www.law.go.kr/법령/국세기본법/제48조> (<https://www.law.go.kr/법령/국세기본법/제48조>)).
- 납부지연 가산세는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날까지 하루 10만분의 22예요(국세기본법 제47조의4, 시행령 제27조의4 제1항 <https://www.law.go.kr/법령/국세기본법/제47조의4> (<https://www.law.go.kr/법령/국세기본법/제47조의4>)).
-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비율을 곱하므로, 공제 안이라 산출세액이 0원이면 무신고 가산세의 계산 기준도 0원이에요. 다만 신고 자체를 했는지는 이후 10년 합산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.
-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고, 신고서를 내지 않은 경우 등은 15년이에요(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항 <https://www.law.go.kr/법령/국세기본법/제26조의2> (<https://www.law.go.kr/법령/국세기본법/제26조의2>)). 예전에 넣어 준 돈이 있다면 기한이 지났더라도 기한 후 신고를 고려하세요.
- 홈택스에서 기한 후 신고를 하는 메뉴 위치와 필요 서류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어요. **공식 확인**이 필요해요.

5. 유기정기금 증여

- 정기금(정기적으로 나누어 받는 돈)을 받을 권리는 그 권리의 성질, 내용, 남은 기간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해요(법 제65조 제1항 <https://www.law.go.kr/법령/상속세및증여세법/제65조> (<https://www.law.go.kr/법령/상속세및증여세법/제65조>)).
- 시행령 제62조 제1호는 유기정기금(기간이 정해진 정기금)의 가액을 잔존기간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연 이자율로 할인해 합산한 금액으로 정해요. 다만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를 넘을 수 없고, 평가기준일 현재 계약의 해지 등으로 받을 수 있는 일시금이 더 크면 그 일시금의 가액으로 해요(<https://www.law.go.kr/법령/상속세및증여세법/제62조> (<https://www.law.go.kr/법령/상속세및증여세법/제62조>)).

- 이때의 이자율은 연간 1,000분의 30, 즉 3%예요(시행규칙 제19조의2 제3항 <https://www.law.go.kr/법령/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/제19조의2> (<https://www.law.go.kr/법령/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/제19조의2>)).
- 정기금을 약정하지 않고 부모가 매월 임의로 넣어 주는 돈은 입금할 때마다 증여로 보일 수 있어요. 약정과 지급계획을 입증할 서류의 요건, 신고 시점 처리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어요. **공식 확인**이 필요해요.

6. 「홈택스 자녀증여 신고문의」

- 신고서에는 증여재산의 종류, 수량, 평가가액 및 각종 공제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요(법 제68조 제2항, 시행령 제65조 제2항 <https://www.law.go.kr/법령/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/제65조> (<https://www.law.go.kr/법령/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/제65조>)).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를 확인하는 가족관계 서류가 여기에 들어가요.
- 홈택스(<https://www.hometax.go.kr> (<https://www.hometax.go.kr>))의 신고 메뉴 이름, 미성년 자녀 명의 로그인과 법정대리인 인증, 신고서 입력 항목은 이 글에서 공식 안내 페이지를 확인하지 못했어요. **공식 확인**이 필요해요.
-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는 일정한 경우에만 생겨요(법 제4조의2 제6항). 구체 요건은 **공식 확인**하세요.
-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넘으면 담보를 제공하고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어요(법 제71조 제1항 <https://www.law.go.kr/법령/상속세및증여세법/제71조> (<https://www.law.go.kr/법령/상속세및증여세법/제71조>)).

7. 계약자 변경 증여

- 보험의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을 증여일로 보고,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보험료를 낸 사람이 아닌 수령인이 낸 보험료 비율에 따라 보험금 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해요(법 제34조 제1항 <https://www.law.go.kr/법령/상속세및증여세법/제34조> (<https://www.law.go.kr/법령/상속세및증여세법/제34조>)).
- 계약자만 자녀로 바꾸는 시점의 증여 판단과 신고 방법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어요. **공식 확인**이 필요해요.

8. 가상 예시

F씨(가상)는 2026년 3월에 자녀(미성년) 계좌로 1,500만원을 보냈고, 배우자는 2028년에 같은 자녀에게 1,000만원을 보냈어요. 10년 합산 기준으로 두 증여는 합쳐져 2,500만원이에요. 미성년 공제 2천만원을 빼면 과세표준 500만원이고, 10%를 적용하면 산출세액 50만원, 기한 안에 신고하면 3% 공제로 약 48만5천원이에요. 2028년 증여 때 신고기한을 지켰다면 가산세는 없어요.

유기정기금의 가상 예시는 이래요. 연 600만원을 10년간 받는 약정이 있고, 첫 지급이 1년 뒤라고 가정하면(경과연수 n은 1부터 시작한다고 가정, 실제 기준은 **공식 확인**), 연 3% 할인으로 평가한 값은 약 5,118만원이에요. 1년분의 20배(1억2천만원)보다 작아 그대로 쓰고, 미성년 공제 2천만원을 빼면 과세표준 약 3,118만원이에요.

9 체크리스트

- 입금일, 금액, 보낸 사람(아버지/어머니)을 표로 정리했다
- 최근 10년 안에 같은 사람(부모 합산)에게 받은 증여를 모두 합했다
- 미성년 공제 2천만원 사용 여부를 확인했다
- 신고기한(증여받은 달 말일부터 3개월)을 확인했다
- 기한이 지났다면 기한 후 신고로 가산세 감면 기간(1·3·6개월)을 계산했다
- 정기적 입금이라면 약정서 등 입증 서류가 있는지 확인했다
- 홈택스 신고서와 첨부 서류를 준비했다

10 용어 정리

- **수증자**: 증여를 받는 사람이에요. 증여세 납세의무자예요.
- **10년 합산**: 같은 증여자에게서 10년 안에 받은 증여를 합쳐 계산하는 규정이에요.
- **유기정기금**: 받는 기간이 정해진 정기금이에요.
- **기한 후 신고**: 신고기한이 지난 뒤, 세무서가 결정하기 전에 하는 신고예요.
- **신고세액공제**: 기한 안에 신고해 산출세액에서 3%를 덜어 주는 제도예요.

11 자주 묻는 질문

Q. '아이계좌로 입금된 돈 증여신고 언제하면 될까요?'

A. 입금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이에요. 예를 들어 3월 입금이면 6월 30일까지예요(법 제68조 제1항).

Q. '자녀계좌 기한 후 신고 및 유기정기금 증여 문의': 기한이 지났어요.

A. 세무서가 결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고, 6개월 안에 하면 무신고 가산세 감면이 있어요(국세기본법 제45조의3, 제48조 제2항 제2호). 유기정기금 평가는 연 3% 할인이에요.

Q. '홈택스 자녀증여 신고문의': 공제 안이면 신고 안 해도 되나요?

A. 법은 증여세 납세의무자에게 과세표준 신고를 요구해요(법 제68조 제1항). 실무상 신고 면제 요건은 **공식 확인**하세요.

Q. 어머니와 아버지가 각각 넣으면 2천만원씩 공제되나요?

A.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합쳐서 봐요. 부모 합계 2천만원이 한도예요(법 제47조 제2항, 제53조 제2호).

12 근거로 삼은 공식 출처

-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·제4조의2·제26조·제32조·제34조·제45조·제47조·제53조·제53조의2·제55조·제65조·제68조·제69조·제71조: <https://www.law.go.kr/법령/상속세및증여세법> (<https://www.law.go.kr/법령/상속세및증여세법>)
-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·제46조·제62조·제65조: <https://www.law.go.kr/법령/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> (<https://www.law.go.kr/법령/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>)
-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2: <https://www.law.go.kr/법령/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> (<https://www.law.go.kr/법령/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>)
- 국세기본법 제26조의2·제45조의3·제47조의2·제47조의4·제48조: <https://www.law.go.kr/법령/국세기본법> (<https://www.law.go.kr/법령/국세기본법>)
-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: <https://www.law.go.kr/법령/국세기본법시행령> (<https://www.law.go.kr/법령/국세기본법시행령>)
- 국세청 홈택스: <https://www.hometax.go.kr> (<https://www.hometax.go.kr>)



공유

공유하기

카카오톡



링크 복사

네이버 블로그

밴드

X

Facebook

💬 다른 고민 보기 · 🌟 루리에게 추천 상담 받기

13 마감 임박 공모전

출처: 루리의 줍줍(sungprofile.cloud) · 최신 내용은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